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조 현 예

■ 지방재정 주요 질의·회신 [Ⅲ]

※ 본 질의회신 사례는 최근(2007년~2009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을 종합한 것으로서 3회에 걸쳐 게재하는 것임

- 2007년 질의회신(Ⅰ), 2008년 질의회신(Ⅱ), 2009년 질의회신(Ⅲ)

<예산편성 및 운용 분야>

1. 첨단산업클러스터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여부
2. 사회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여부
3.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인 임대료 차액 융자금 지원 가능여부
4.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설치 가능여부
5. 지방의원 청렴교육비용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가능여부
6. 경로당 시설 건립비용 민간자본보조 지원 가능여부
7.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가능 여부
8. 특사경수사활동비 지급요건 및 범위 관련
9. 파견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가능 여부
10. 군부대 체육시설 관리비용 보조가능 여부
11.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등 설립비용 재정지원 가능 여부
12. 예비비의 재배정 가능 여부
13.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여부
14. 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
15.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16.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가능여부
17. (구)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중 퇴직금 산정기준

<기타 재정제도>

18. 시 금고 외 시중은행 또는 기업어음()발행을 통한 일시차입 가능여부
19. 산업단지 용지보상비 및 수입금 등의 세입세출외 관리 가능 여부
20. 직원제안제도 특별승급 및 상여금 수령과 예산성과금 관계
21.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인수 협약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22. 보증채무부담행위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여부
23. 특별회계와 유사목적의 기금 통합절차



1

첨단산업클러스터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여부

재정정책과-279 (2009.01.22)



질의요지

-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경제자유구역내 산·학·연의 활성화 및 각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클러스터재단(가칭)’ 설립을 검토 중에 있는 바,
- 시 지원조례에 근거한 첨단산업클러스터재단(가칭)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임
 - i)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ii)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iii)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iv)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면 재정지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 적용이 배제되어 기부, 보조 또는 공공의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사회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62 (2009.01.13)



질의요지

- 개별 법령·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중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현재 모든 사회단체에 대하여 상근직원 인건비(단순 인건비 제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법령(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단체의 인건비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 개별 법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3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인 임대료 차액 융자금 지원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22 (2009.01.09)



질의요지

- △△지구사업개발지구내 세입자 이주대책일환으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하였으나, 주택공사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임대료보다 높은 가격으로 민간 업체에서 임대 받은 민원인들이 임대료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민원 제기됨에 따라,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입주시(2009. 1)부터 분양전환시점 까지(향후 10년) 민간업체에서 임대받은 민원인들에 대하여 대출(대여)하도록 결정된 바,

질의 1)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배정받은 주민에게 5,000만원(연1%)을 10년간 예산 편성 운영기준 「민간융자금」 목에 편성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은 2009년 12월 31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정산결과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을 선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준공 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원칙적으로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으나,
 -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는 재정지출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민간융자금」의 경우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보조금 형태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령, 보조금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설치 가능여부

재정정책과-740 (2009.03.01)



질의요지

-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기타특별회계의 설치 가능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단일예산주의」가 원칙임
 - 그러나 모든 행정활동을 하나의 예산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효율성과 능률성 면에서 떨어져 예외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재정수지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동 사안의 기타특별회계 설치여부는 상기내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재정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5

지방의원 청렴교육비용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가능여부

재정정책과-739 (2009.03.01)





질의요지

-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도의 향상과 윤리의식제고를 위하여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당한 선발절차를 거쳐 소속의원 2명 정도를 “국가 청렴 지도자 과정” 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 참가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의원 개개인의 사적활동이 아니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등과 같이 공적 활동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이 내부적인 계획에 따라 선발절차를 거친 소속 의원들의 청렴도와 윤리의식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의회의 공적인 활동으로 보여지므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경로당 시설 건립비용 민간자본보조 지원 가능여부

재정정책과-1306 (2009.04.08)



질의요지

-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간에는 마을 경로회에 신축사업에 대해서만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바,



- 마을경로회에서 경로당시설(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을 설치·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설매입비 목적으로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민간자본보조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자치단체 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우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경우 환수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와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조건에서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 특히, 민간자본보조로 교부된 재원으로 조성된 재산의 귀속문제를 명백히 하여 지방세 등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경로당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축사업으로 할 것인지, 기존시설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추진방식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7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가능 여부

재정정책과-1635 (2009.04.30)



질의요지

-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사업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법」 제121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교육기본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및 「장학금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 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사무 및 수업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 교육 사무의 성격임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정치적인 재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개인 등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가 없이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법령에 근거 없는 경비지출은 곤란
- 특히, 구체적인 지원근거 등이 없이 임의로 보조금 지급 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 선거직공무원의 기부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 지 신중한 검토 필요

8

특사경수사활동비 지급요건 및 범위 관련

재정정책과-1590 (2009.04.28)



질의요지

- 해양수산과의 경우 수산업법 제64조(사법경찰권)에 의거 수산에 관한 특별사법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업지도담당의 경우 불법어업 단속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양수산관련부서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불법어업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 근무자에 대한 특사경수사활동비를 지급가능 여부



답변내용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써 지급대상은 우선 조직단위로 구분하고 그 조직내에서 전담하는 공무원임을 조건으로 판단함
- 따라서 「특사경수사활동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전체를 전담하는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9

파견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가능 여부

재정정책과-4435(2009.10. 8)



질의요지

- 시·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한 경우에 대민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해당됨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60조에 의하여 사무직원을 두며, 동법 제16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61호)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 별표 2의 업무추진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항목에 의하면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이하, 시·군·구 근무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되 다만, 원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민활동비는 시·도, 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파견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등은 당해 조합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10

군부대 체육시설 관리비용 보조가능 여부

재정정책과-2287 (2009.06.02)



질의요지

- 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군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가시설로 시설 개방이나 이용은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로서,
 - 이용객의 이용료를 전제로 운영하지 아니하며, 국가시설로서 국방부가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지원

-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개방·이용 활성화 등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의하여 처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

※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도·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므로,
 - 국가시설인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개방, 이용활성화 등을 위한 비용이나 자본적 경비의 지출 등 보조금 지출은 곤란

- 따라서,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성격, 관련업무(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체육시설이 군부대 시설이라면, 동 시설의 경비지출의 주체는 국가(국방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11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등 설립비용 재정지원 가능 여부

재정정책과-3076 (2009.07.24)



질의요지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도서관법,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 △군이 지역교육청에 도서관 및 영재교육원 신설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도서관 설립 지원 관련

- 교육청이 설립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으로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은 시도교육감의 가장 근본적인 사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 제 35조, 동법시행령 제6조 등)에 속하는 것으로서,
 - 부지매입비 등 설립비용 부담 의무는 해당 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에 있다 할 것임
 - 특히,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설치·경영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그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교육청이 설립하는 공공도서관 설립과 관련한 일반·포괄적인 재정지원은 곤란함
- 이에 「도서관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도 자치 단체가 설립하는 공립공공



도서관과 교육감이 설립하는 공립공공 도서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운영비의 일부” 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임

- 또한, 현재 「공유재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무상 양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용의 지원은 관계 법령의 제정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등 문제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영재교육원 설립 지원 관련

- 「지방자치법」 제3조(건전재정의 운영), 제141조(경비의 지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지며,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9조, 「영재교육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영재교육은 시도교육감의 사무로서 시도교육학예사무에 해당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일반행정 기관이 교육학예기관으로 이전하는 경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이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된 사무권한과 재정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 때,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함” 은 “시·도사무(시·도교육청 사무)” 의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 “시·군·자치구(시·도 또는 시·군·자치구)”가 그 관련경비를 부담·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 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학예사무는 시·도 사무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인 동시에 교육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조,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제한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이 곤란

12

예비비의 재배정 가능 여부

재정정책과-4270(2009. 9.28)



질의요지

-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서(건설과)에 배정된 예비비를 다시 먼·동에 재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경리관)이 그 사



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위임을 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함

- 따라서, 긴급 재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예비비가 보조기관에 세출예산으로 배정되었으나, 당해 사무가 면·동에 재위임된 경우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13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여부

재정정책과-2957 (2009.07.19)



질의요지

- 조례 상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회 10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을,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심의·확정권(지방자치법 제39조)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의회와 단체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시 한도액과 같이 예산규모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 원리의 균형을 잃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에서와 같이 예산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한을 통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됨

14

예비비 사용 가능여부

재정정책과-3593 (2009.08.27)



질의요지

-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추가편성이 불가하고 납기초과시 1일 130만원의 가산금이 발생하여 예비비 사용하고자 할 경우 '09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상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으로 예비비 지출이 제한되는지
-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 2010년에 전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
-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예비비의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내재적 제약 및 실정법상의 제약사항을 참고로 적시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 지출의 해당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동 내용과 관련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여건 등을 종합하여 자율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 구분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예산운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15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재정정책과-3850(2009. 9. 9)



질의요지

-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관련 토론회·예산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 및 교직원단체 소속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참여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동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그 방법으로서 i)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ii)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iii)사업공모, iv)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각 자치단체 장은 위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사업공모 외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외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법령에 직접 근거한 토론회·설명회 등은 조례의 제정 이전에도 가능한 것임

16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가능여부

재정정책과-3802(2009. 9. 7)



질의요지

- 현행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자녀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육성의 일환으로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바,



-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 이하 ‘운영기준’) 제5조 제2항 [별표9] 일반보상금(301) - 장학금 및 학자금(02) 항목에 의하면,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중고교)로서 규정하여 그 지원의 범위를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위 운영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6]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보상금 등의 지원 범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17

(구)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중 퇴직금 산정기준

재정정책과-4270(2009. 9.28)



질의요지

-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산정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여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해주시로 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내용

- (구)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이하 ‘기준’)」은 198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매년 환경미화원 노조(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와 협의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시에 적용하는 인부임 기준을 작성하여 시달한 지침으로서, 2006년 이후에는 별도 기준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실조회를 요청하신 2005년도 기준의 퇴직금 산출시 150% 가산방법은 1992년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환경미화원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1년당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던 방법을 누진을 적용방식으로 개선한 것임
- 이러한 방식은 당시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일시금을 $(\text{보수월액} \times \text{재직년수} \times 150/100) + \{(\text{재직년수}-5) \times \text{보수월액} \times 1/100\}$ 으로 산정하던 방식을 일부 준용한 것으로서,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5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은 $(\text{보수월액} \times \text{재직년수} \times 150/100)$ 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임

18

시 금고 외 시중은행 또는 기업어음(CP)발행을 통한 일시차입 가능여부

재정정책과-855 (2009.03.11)



질의요지

- 시금고가 아닌 타 시중은행에서의 일시차입 가능 여부



- 당좌예금 개설을 통한 기업어음(CP) 발행 및 시중유통 가능 여부 및 기업어음 발행 방식으로 일시차입금한 경우 이자보전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일시차입금은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향후 세입이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금고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전을 의미함. 이러한 일시차입금은 차입선의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기업어음(CP) 발행은 상법에 의한 것으로 보통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무담보-단기어음으로 발행하며 금융기관은 다시 일반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게 되는 제도임.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유통·회수문제 등도 우려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어음(CP)발행은 사실상 곤란할 것임
- 결과적으로 일시차입금을 금고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일시차입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지 않으나, 시중유통 등이 허용되는 기업어음(CP) 형태로 자금을 확보하기 보다는 타 은행과의 약정을 통하여 일시차입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19

산업단지 용지보상비 및 수입금 등의 세입세출외 관리 가능 여부

재정정책과-1341 (2009.04.09)



질의요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공공시설인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위·수탁 협약 체결후 지방자치단체가 용지매수업무를 대행 추진함에 있어,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위탁금(보상비 및 경비)을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및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따라서, 당해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모든 세입을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운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위·수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수입금의 문제는 동수입금에 대한 권한이 위탁자에게 속하는지 수탁자에게 속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하여 당연히 수입주체가 되는 규정이 없다면 위·수탁 협약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0

직원제안제도 특별승급 및 상여금 수령과 예산성과금 관계

재정정책과-1275 (2009.04.06)



질의요지

- 직원제안제도 시행으로 받은 특별승급과 부상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제4항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내용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제4항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라 함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과 같이 관계 규정에서 동일한 사유로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 등으로 지급된 경우를 말함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서 자치단체 예산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 지급과 인사상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제안 채택으로 받은 특별승급은 예산성과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며, 다만 지급받은 부상금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장
안상여금이 아니라면 예산성과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1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 협약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재정정책과-1715 (2009.05.07)



질의요지

- △△시에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당사자(○○
도지사, ○○도개발공사장, △△시장)간 세부협약을 맺었는 바, 미분양 용지 발
생 시 △△시가 인수하도록 협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인 것으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물건의 인도 또는 특정
의 행위·부작용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할 때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의 범주내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일부로써 다루어지는 것으
로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 동 질의는 채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써,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경우와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경우가 아닌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이 경우는 채무확정 금액이 없는 관계로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예산과는 달리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22

보증채무부담행위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여부

재정정책과-3540 (2009.08.25)



질의요지

- △△군이 영세농가 농자재구입 긴급 특별지원자금 지원에 관련한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양구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농가 수, 채무보증액, 이율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양구군청이 변경한 내용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미리 양구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재정법 제13조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제2항),
 -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항)

- 위 지방재정법 규정은 보증채무부담행위가 미래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13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양구군청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무보증액, 이율 등을 변경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양구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양구군청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당해 계약의 중요한부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항에 의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3

특별회계와 유사목적의 기금 통합 절차

재정정책과-4473(2009.10.12)



질의요지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하기 위하여 동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특별회계 재원을 기금으로 바로 전출할 수 있는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출 후에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문의하신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 등 운용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 특별회계에서 기금에 직접 전출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특별회계 폐지 이전에 가능한 방법일 것이며
 - 또한, 특별회계를 폐지한 후에는 단일예산주의원칙에 따라 잔여자금이 일반회계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은 별도의 예산편성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나,
 - 구체적인 예산운용의 방법은 자치단체가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성격과 설치 목적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성격과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통합운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임

